

온천법령의 이해

1. 목적(법 제1조)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 온천의 효율적인 개발·이용
공공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2. 온천 및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정의(제2조, 제23조)

(온천)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 유해성분 미포함(질산성질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일본) 25도 이상의 온수 또는 유효성분(유황 등 19개성분) 포함 (독일·체코) 20도이상+성분기준, (헝가리) 30도이상+성분기준

(지하수)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 빈틈에 있는 물

(지하수법 관계) 온천지구에 대한 지하수법 적용 제외(지하수개발이용허가, 수질검사 등), 원상회복 절차에 대한 지하수법 준용

* 지하수법 제4조 : 지하수와 관련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이행보증금, 원상회복, 오염방지명령은 제외)

* 관광진흥법/도시개발법(개발), 공중위생관리법(수질)

(온천우선이용권자)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 + 온천공 토지 소유자(승계 인정)

* (연혁) 신고자 → 신고수리자 → 신고수리자 + 온천공 토지소유권자 등

* (온천지침1) "차순위 온천우선이용권자"

(허가대상) 온천수 목적 모든 굴착(온천공 확대 포함)

(신청서류) 굴착동의서(1년이상), 지적도, 굴착 및 복귀 계획서, 온천전문검사기관 결과보고서(부존가능성)(보조공×)

* 유효기간 1년(6개월 연장)

(불허가사유)

토지의 전부 소유자(×) 또는 소유권자로부터 동의(×)
온천전문검사기관의 조사결과 부존가능성이 없는 경우
기존 온천공과 1천미터 이내(온천공 확대, 보조공 제외)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생태·경관보전지역
규토계획법 공공사업에 지장 우려, 온천법 또는 다른 법령 위반

(온천지구내 토지굴착 제한) 온천지구에서 지하수 개발 제한

* (예외) 공공시설 업무용, 농업용수 공급용, 온천이용허가자의 온천이용객 편의용, 1일 30톤 이내 사용

* 건설공사 등 토지굴착에 대한 필요 조치 명령 가능

(지하수 개발시 온천 발견)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고 등에 따라 온천 발견시에는 온천굴착신고를 하여야 함(온천전문검사기관 조사결과보고서 첨부)

(이행보증금 예치) 굴착허가 신청자, 온천이용허가 신청자, 온천 발견신고자(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제외)

(원상회복 의무) 굴착허가 취소, 이용허가 취소, 발견신고수리

(권리) 온천지구 굴착허가 및 이용허가 우선권, 온천이용시설 설치 비용 및 용자알선, 온천지구 의견 제출, 온천공보호구역 신청(보충적), 온천개발계획 신청(보충적)

3. 국가 및 지자체 책무(제3조)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온천의 발전, 온천문화의 창달, 온천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 확보 및 시책 수립·추진

(지자체 책무) 온천발견신고 수리이후, 원활한 개발을 지원, 효율적 관리 및 보호 이행

4.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제4조)

(온천자원의 합리적 보전·관리) 온천장 수질 강화, 온천자원관측 시스템 고도화, 미개발 온천지구 관리 강화, 온천자원조사 내실화

(온천의료문화 창출) 보양온천 지정 확대, 온천의료관광 활성화, 힐링온천 10선 발굴·홍보, 온천도시 법제화 및 지정 추진

(온천산업 활성화 촉진) 온천대축제 개선, 온천수 사업화 활성화, 온천수 열에너지사업 활용 확대, 온천 산학연 협력 강화

(온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온천수의 의료적 활용 토대 구축, 온천수 성분에 대한 체계적 관리, 온천 전문가 육성

5. 굴착허가(법 제12조)

(허가권자) 시장·군수

취소 등의 경우

(원상회복 명령) 온천지구에서 미굴착허가, 벌칙(2년, 2천만원) 및 과태료(200만원)

(원상회복의 절차와 방법) 지하수법 15조 준용

* 원상복구의 예외(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 :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신고 이후 계속 개발·이용, 수위관측망 또는 수질관측망 이용, 지형 여건상 원상복구 필요가 없는 경우(시장·군수 인정)

6. 온천발견신고 수리(법 제21조)

(수리권자) 시장·군수

(신청) 온천전문검사기관 검사보고서 제출(온천공 검사, 신고자 부담)

(수리기준) 온천의 개발·이용의 가치를 판단

온도기준, 성분기준(유해성분)

1일 적정 양수량이 300톤 이상(수위강하 100미터이내)

인근 온천 및 지하수공에 대한 영향 유무

환경오염, 온천수요 전방 및 주변여건, 토지 소유 여부 등

(수리제한)

기존 온천공과 1천미터 이내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생태·경관보전지역

공공사업에 지장 우려 등

(수리방법) 2이상의 온천발견신고가 있는 경우 접수순서에 따른

선순위자의 신고공에 대한 수리여부 판단, 차순위자는 차후 검토

(수리효과) 온천우선이용권리 발생(토지굴착허가, 우선이용허가)

(반려조건) 검사비용 미납부, 온천발전과 관련한 법령 위반

(신고수리 취소)

- 1) 신고사실이 다른 경우
- 2) 온천우선이용권자의 개발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 3) 3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 신청, 개발계획 신청이 없는 경우 (3년 이내에 한차례 취소 유예 가능)
- 4)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 5) 온천개발계획 취소

* (온천법 제21조제4항)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천발전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 (온천원보호지구 해제 절차) 온천발전신고수리 취소(법 제21조), 온천원보호지구 해제(법 제10조)

7. 온천공보호구역 지정(법 제5조)

(승인권자) 시·도지사

(지정요건) 30,000㎡ 이하, 온천전문검사기관 검사(온천자원평가조사)

(지정효과) 보호구역 지정시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해체, 토지용

* (온천법 제5조제3항) 시장·군수는 온천공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온천법 제5조제4항) 제3항제4호에 따라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착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사업 미시행 시점) 토지보상법에 따른 고시 시점(법 제10조의4제3항), 토지소유권 100% 확보(농지전용부담금 등 납부 완료) 등 고려

8. 온천개발계획 수립·승인(법 제10조)

(승인권자) 시·도지사(신고수리 후 6개월 이내 승인, 신청이후 60일 이내 승인)

(계획요건) 30,000㎡ 이상

* 온천우선이용권자는 보충적 신청권을 가짐(시장·군수 의견조회 ×)

(계획내용) 주변여건, 수요전망 및 개발방향,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보고서(온천자원평가조사), 개발면적, 토지이용계획, 온천이용시설 설치계획, 환경 정비 및 관광 관련사항, 기타 온천의 개발과 관리, 온천공별 책임급수망 구성·운영

(승인기준) 적정양수량, 효율적 시설배치, 주변환경 적합성, 지역개발계획과 관련성, 수질악화 등 자연생태계 영향

(개발계획 변경) 개발계획 내용 변경(온천우선이용권자도 신청 가능), 면적 확대·축소 등

도를 개발용도에 맞게 변경 필요

(신청서류) 소규모 온천개발계획, 토지조사, 온천전문검사기관 검사보고서(온천자원평가조사),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및 주변조건 의견서

* 온천우선이용권자는 보충적 신청권을 가짐

(검토사항) 적정양수량, 개발가능성 등 소규모 온천개발 적합 여부, 토지의 용도 및 개발가능 부지의 면적, 이용시설의 종류 및 규모, 인근 온천에 미치는 영향, 자연환경 등 주변의 조건

(지정기준) 적정 양수량, 온천원보호지구 미해당, 온천우선이용권자의 부지가 50% 이상, 소규모 온천개발 필요 지역(주변여건, 기존온천 유무 등)

(지정 고시) 30일 이상 일반인 열람, 지형도면 작성(토지이용규제기본법 준용)

(지정절차 이행) 신고수리 이후 6개월 이내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절차 이행

(지정해제권자) 시장·군수

(지정해제 절차) 온천우선이용권자 등 주민의견

(지정해제 요건) 온천원 고갈(온천전문검사기관 검사 필요), 개발이용 가치 하락, 개발사업 중단, 1년 6개월 사업 미시행(6개월 내 1회 연장 가능)

* (변경승인 예외) 전체면적의 10% 미만 증감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온천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 자문(시도, 시·군·구)

(인허가 의제) 29개 법률 인허가 처리(30일 협의간주제)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개발계획 예정지역 경계로부터 1km 이내, 지하수보전구역 지정 해체

* 관보(공보) 고시, 30일 이상 일반인 열람, 지형도면 작성(토지이용규제법 준용)

* 온천개발계획 취소시 온천원보호지구도 지정 해제

*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에도 대도시특례도 적용

(개발면적) 66.2㎡ × 일일 적정양수량(톤)

* 온천개발지역의 토지가 온천개발자 소유일 경우 100% 추가

(환경영향평가) 30만㎡ 미만은 전략환경영향평가, 30만㎡ 이상은 환경영향평가

(개발계획의 시행) 토지수용·사용권, 토지보상법 및 국토계획법 준용

(승인취소 요청) 시장·군수는 온천우선이용권자 등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 요청

(승인취소 요건) 온천원 고갈(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개발이 용 가치 하락, 개발 중단, 2년 이내 사업 미시행(6개월 내 1회 연장 가능)

* (사업 미시행 시점) 토지보상법에 따른 고시 시점(법 제10조의4제3항), 토지소유권 100% 확보(농지전용부담금 등 납부 완료)

* (온천지구간 변경) 온천공보호구역→온천원보호지구로 변경,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의 변경은 직접 전환은 불가능하고 관련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민원처리 보완 요구) 온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신청 자료의 미흡 등으로 불승인에 해당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자료로 보완하도록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온천지침 6, 민원처리법 제22조)

(동력장치 설치) 시장·군수 허가, 수문관측시설 동시 설치(수위측정장치, 유량계, 온도계)

9. 온천의 이용허가(법 제16조)

(허가권자) 시장·군수

(신청서류) 온천이용계획서, 수질검사서, 온천공 현황(양수시험결과), 공급계약서

(불허가조건)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아니거나 공급계약 체결한 자가 아닌 경우, 온천지구 이외의 지역에서 신청(개발계획에 포함시 온천원보호지구외 지역은 허가 가능), 성분기준 미충족, 목욕용 수질기준 미충족, 온천 고갈(온천전문검사기관 검사 결과), 적정 양수량 초과 신청, 다른 법령 위반

(이용허가 대상) 공중의 음용, 목욕장업 및 숙박업에 우선 제공, 난방에너지시설, 산업시설·공중시설(양어, 온실, 화장품, 의약품 등 제조시설, 관광숙박업 및 유원시설업, 골프장, 스키장, 수영장)

(행위제한) 온천이용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온천허가를 받은 것처럼 행위 X,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행위 X, 온천표시 X

(허가조건) 유효기간은 5년, 5년단위 연장(온천자원조사 결과 반영, 연장기간 및 허가량 조정)

(허가량 결정) 온천전문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른 적정 양수량의 범위에서 시설규모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결정

(일시적 이용허가 조건) 온천우선이용권자, 온천이용시설을 갖춘 자가 온천지구로 지정될 때까지 가능

(의제처리) 숙박·목욕장업, 담배소매인 지정, 영업허가, 체육시설 신고, 유흥시설 설치의 인정 등(30일 협의간주제)

(취소 및 제한) 보건상위생상 위해,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

* 위해 예방 및 시설개선 조치 명령 가능

(공동급수) 자격요건, 사용료 등을 조례로 규정(21개 지자체)

(온천검사 의뢰) 시장·군수는 굴착허가, 동력장치설치허가, 온천이용허가를 위한 온천전문검사기관에 조사 또는 검사 의뢰 가능

10. 수질 및 성분 검사(법 제17조, 제19조)

(온천목욕장 수질기준) 대장균군

(수질검사) 시장·군수, 1년(수시 가능), 인체 유해 여부(음용적합 여부 포함)(시도 환경보건연구원)

(성분검사) 시장·군수, 5년(유황, 탄산은 연 1회 이상), 온천성분 17개 성분(한국지질자원연구원)

(게시 의무) 수질 및 성분검사 결과, 온천의 온도, 음기증, 주의 사항, 온천성분의 치료효과 등

(행정조치) 3개월 이내 재검사, 이용허가 취소

11. 온천자원 관리

(온천자원 보전) 시장·군수는 시설개선·오염방지 명령, 온천자원 조사 실시

* 온천자원조사 미이행시 발견신고 수리 및 이용허가의 연장 불가

(온천자원조사) 시장·군수는 이용허가일로부터 5년마다 적정양수량, 수위변동상황, 수질·성분의 변화 등 온천의 특성, 부존량 및 부존 범위 조사(고갈가능성, 보건위생상 위해에 따른 필요한 조치 의무)

(온천자원 관측장비) 행안부장관은 온천자원 관측시설 설치(온천지구별 1개 이상), 온천 수위변동 및 이용량 등 조사

* 현재 51개소 관측시설 설치(온천협회 위탁)

* 충남 아산시 온천공모니터링시스템 운영

(출입검사) 소속공무원 온천시설 및 온천이용시설에 출입, 검사 가능(허가량 초과, 거짓·과장 광고)

12. 보양온천

(승인권자) 행안부장관

(지정기준) 온천수, 보양온천시설, 보양온천환경 고려

(온천수) 35도 이상 또는 총고용물함량 1,000mg, 유황, 탄산 함유

(보양시설) 건강시설(1,000㎡ 이상, 상담/음급실, 운동욕장, 수영장 등), 기본시설(온천욕장, 사우나실, 찜질방, 노천탕, 식당 등), 부대시설(숙박시설, 의료시설 등)

(보양환경) 야외공기 청정도, 실내공기 청정도, 실내 소음도, 경관, 교통 등 고려

(지정현황) 2009년부터 10개 지정(조건부 3개소)

(일본 보양온천지) 1954년부터 94개 지정

13. 온천도시

(지정권자) 행안부장관

(지정조건) 온천관광 등 온천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추진현황) 연구용역(18년), 온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중

(유사사례) 웰니스관광 클러스터사업(문화부)

* 18년 경남(산청, 고성 등), 19년 충북(충주, 제천)

14. 온천전문검사기관(법 제7조)

(등록기준) 전문인력 3명, 장비

(상급인력) 지질 및 지반기술사, 응용지질·지구물리 전공, 온천개발 관리업무 중 1명

(하급인력) 응용지질, 지구물리 전공 2명, 화학 전공 1명

(장비기준) 플리탐사 및 검층장비, 간이수질측정장비, 수위측정장비, 수량측정장비, 야외수질분석장비

(등록현황)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10개 기관

15. 기타

(종사자교육) 연간 4시간, 공중위생관리법의 위생교육 면제, 온천협회 위탁

(온천협회) 조사자교육, 관측장비 위탁(2007년 인가)

(대도시 특례)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인정

(시정요구) 행안부장관은 지자체의 승인, 신고수리, 허가가 위법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청문) 굴착허가의 취소, 온천이용허가의 취소

(수수료) 온천법 시행령에 한도 규정(수질성분검사는 조례)

(온천대축제) 2007년부터 매년 실시(2019년 전북 고창)

16. 최근 온천관련 동향

1) 온천지구 취소 사례

안동 도산온천 개발계획 승인 취소
영종도 온천 개발 물검품
27년 풀던 덕정온천 개발 결국 마친표
화성시, 병점온천공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2) 온천개발 실패 사례

애물단지 영광 해수온천랜드 매각
수십년째 '개발중', 애물단지된 온천지구

3) 온천공 방치로 인한 오염

온천공 개발 취소 후 방치... 지하수가 위험하다.
온천굴착허가 취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4) 온천목욕장 수질

온천시 '레지오넬라균' 나왔는데...
레지오넬라균, 염소소독 기준 마련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19.7월)

4) 온천지구 재생

동래구, "온천장 도시재생 300억, 유티-온천 특화거리로 육성"
* "단순히 300억원을 투자한다고 온천장이 살아나지 않는다", 여러 콘텐트가 복합돼야만 관광객을 끌어올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여행창조연구소, "여관도 10만원인데 일본 안 간다고 국내여행 할까요?"

* "100년이 넘는 오래된 전통 여관에 있는 조그만 노천탕이 가진 감성이 우리 온천에는 없다는 얘기다. 그저 크게만 짓고, 편의성만 강조한 국내 온천이 료칸을 대체할 수 없는 이유다."

5) 웰니스관광 활성화

대전 유성온천, 문체부 '웰니스관광 25선'에 제외
(부산 스파랜드 센텀시티) 18개 다양한 온천탕
(대구 리조트 스파벨리) 온천, 찜질방, 한방바데탕, 동식물원
(스파라쿠아 전주온천) 수소탄산온천수, 찜질시설, 한옥체험
(아산 도고파라다이스) 유황온천, 건강체험프로그램 운영

주요 웰니스관광

(리솜포레스트 헤브나인 힐링스파) 약 30여가지 힐링스파 프로그램 운영, 자연요법, 대체요법, 한방요법, 테라피
(산청 동의보감촌) 최대 한방 테마파크, 한옥스테이, 한방 박물관, 찜질방, 약선식당, 한옥 SPA
(WE호텔 웰니스센터) 천연화산암반수, 숲 테라피

강원도 웰니스관광

홍천 힐리언스 선마을, 뮤지엄산 명상관, 용평리조트, 무릉건강숲, 파크로쉬리조트

히말라야 아난다스파

인도 전통 의학과 요가 등을 접목한 창의적인 의료관광 상품

전북 고창 웰파크시티

관내 양육시설 아동에게 온천휴스파 체험시설 무료 제공

웰니스 관광클러스터

(2018년) 정상남도(산청·함양 등), 한방 항노화, 해양 웰니스
(2019년) 충북(충주, 제천), 깊은산속 응달샘, 계명산 자연휴향림,
한방자연치유센터, 리솜포레스트

6) 온천수 산업화

(화장품) 아산시 온궁브랜드 산자부장관 표창(100만불 수출탑)

- * 강릉 금진온천 크레모랩, 충주 수안보온천 에네스티수안수, 울진 덕구온천 수애진, 제주 산방산온천 등 온천수화장품 출시
- * 수입화장품이 60% 이상 점유(비쉬, 아벤느 등)

(음용수) 승창 강천온천, 장성 백양온천

(입욕제) 아토피입욕제

(천안, 웰니스스파 임상지원센터) 157억, 스파체험 화장품 제조
첨단장비 40여종 구축

7) 유럽의 온천 활용

(치료) 크나이프 요법, 웰니스스파, 수치료 프로그램

(음용) 소화기능, 신진대사 도움

(테라피) 통증완화, 면역증강 도움(탄산, 머드성분 등)

(북한의 온천) 50도 이상 60여개 온천 존재

17. 온천 현황

(온천지구) 대규모 온천개발보다는 소규모 온천개발이 증가 추세
* 온천원보호지구 136개, 온천공보호구역 230개

(온천시설) 약 600개, 목욕업 38%, 숙박업 31%, 숙박 및 목욕업
겸업 23% 등

(온천이용인원) 약 6천만명, 경북, 부산, 경남, 충남이 많음

- * (1위) 대전 유성, (2위) 충남 온양, (3위) 경남 부곡

(온천온도) 30도 미만이 49%, 45도 이상이 22%

- * (최고) 경남 부곡 78도

(수소이온농도) 평균 8.48(5.8~10.6)

(주요성분) 탄산수소나트륨, 염화나트륨, 황산염, 탄산나트륨